

예 산 총 칙

2021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901,549,397	27,046,482
일반회계	798,750,974	23,962,529
특별회계	102,798,423	3,083,953
공기업특별회계	76,885,516	2,306,565
공영개발특별회계	21,291,630	638,749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7,806,240	834,187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7,787,646	833,629
기타특별회계	25,912,907	777,387
의료급여특별회계	348,946	10,468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18,334	550
학교급식지원센터특별회계	5,346,349	160,390
농공산업단지특별회계	2,901,414	87,042
균형발전특별회계	983,810	29,514
주차장운영특별회계	3,350,000	100,50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205,056	6,152
수질개선특별회계	11,216,341	336,490
지하수관리특별회계	1,442,657	43,280
에스디해바라기태양광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	11,200	336
삼익악기태양광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50,700	1,521
소수태양광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8,100	243
음성예코파크연료전지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	30,000	900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4,899,597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지방채차입 한도액은 30,600,00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제 6 조 (자원구분) 의존재원에 대한 약어를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국고보조금(국),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 기금(기), 도비보조금(도), 특별교부세(특), 시군조정교부금등(조), 지방채(채)